



: 2018-04-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569390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주식회사 태광여행사
2. 주식회사 블루스카이여행
변 론 종 결 2018. 3. 26.
판 결 선 고 2018. 4.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는 원고 A에게 366,747,624원, 원고 B에게 9,428,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블루스카이여행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0은 원고 A이, 19/20는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 2018-04-20

태광여행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10은 원고 B이, 7/10은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가 각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주식회사 블루스카이여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1,747,624원, 원고 B에게 13,457,2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친목단체인 'C 클럽'의 회원인 원고들은 위 클럽 회원 9명과 함께 2015. 1. 8. 여행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이하 '피고 태광여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 남부 4박 6일(2015. 1. 14.부터 2015. 1. 19.까지) 골프 여행'이라는 기획여행[이른바 패키지(package)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태광여행사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현지 행사 및 항공권 예약을 필리핀 골프투어 전문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블루스카이여행(이하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은 현지 여행업체인 D에 현지 행사를 위임하여 진행하였다.



다. 원고들 및 위 클럽 회원 9명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5. 1. 14. 출국하여 2015. 1. 15. D가 제공하는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E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자인 F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위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여 50미터 아래의 협곡으로 추락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태광여행사에 대하여

1)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태광여행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 내지 피고 태광여행사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라 볼 수 있는 D의 고용인인 현지 운전자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피고 태광여행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에 대하여

1) 원고는, ①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현지 행사 진행의 대가를 피고 태광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여행 일정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여행자들과 피고 블루스카이여행 간에 수 차례 연락이 이루어진 점,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이 가입한 보험(Travel Agents' Professional Liability Policy)에 기한 보험금이 이 사건 여행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계약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② 피고 블루스카이여행과 현지 여행업체 D의 밀접한 관계, 상호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F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과실 또는 기능상 결함이 있는 차량을 제공한 과실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① 주장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이 필리핀 골프투어 행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업체로 원고들과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한 피고 태광여행사로부터 현지 행사 및 항공권 예약을 위임받아 진행하였는바, 그밖에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이 원고들과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을 보건대, F이 피고 태광여행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 내지 피고 태광여행사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라 볼 수 있는 D의 고용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F이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이 이 사건 차량의 제공·운행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에 기능상 결



함이 있다거나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이 그 기능상 결함에 관하여 어떠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태광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에 대하여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남자, 생년월일: G생, 사고 당시의 연령: 44세 11개월 남짓

②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고용노동부 발행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남성, 5~9년 경력자)의 통계소득인 월 8,743,000원을 월 소득액으로 본다.

③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2030. 2. 14.까지의 181개월

④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요추 2번 골절, 29%[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척추손상 I-A-1-d항, 직업계수 5(일반 옥내노동자)], 원고 A의 입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본다.

(2) 계산: 341,436,024원(= 8,743,000원 × 0.29 × 134.6638,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1, 제11호증의1, 제17호증의1,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병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치료비

13,784,100원(국내병원에서의 치료비)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다) 보조구 비용

400,000원(흉요추 보조구)

[인정근거] 이 법원의 순천향병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공제

8,872,500원(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마) 계산

346,747,624원(= 일실수입 341,436,024원 + 치료비 13,784,100원 + 보조구 비용 40만 원 - 공제 8,872,500원)

2) 위자료

2,000만 원(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3) 손해배상액

366,747,624원(= 재산상 손해 346,747,624원 + 위자료 2,000만 원)



나. 원고 B에 대하여

1) 일실수입

① 성별: 남자, 생년월일: I생

② 직업 및 소득: 원고 B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고용노동부 발행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남성, 3~4년 경력자)의 통계소득인 월 7,683,000원을 월 소득액으로 본다.

③ 기간 및 노동능력 상실률: 필리핀 병원에서의 입원치료기간 10일[K병원(2015. 1. 15.부터 2015. 1. 17.까지), L병원(2015. 1. 18.부터 2015. 1. 24.까지)], 100%

④ 계산: 2,561,000원(= 7,683,000원 × 10일/30일)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제7호증의2,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2, 제17호증의2,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치료비

3,867,691원[= 3,770,191원(필리핀 병원에서의 치료비) + 97,500원(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비)]

[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3, 갑 제15호증의3

3) 위자료

300만 원(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4) 계산

9,428,691원(= 일실수입 2,561,000원 + 치료비 3,867,691원 + 위자료 300만 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태광여행사는 원고 A에게 366,747,624원, 원고 B에게 9,428,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15.부터 피고 태광여행사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태광여행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지나
	판사	김근홍